

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

1. 목적

본 규정은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(이하 '회사')가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협력업체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

회사는 협력업체와의 불공정한 거래 사전예방을 통해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.

1) 소집

- 정기소집 : 분기 1 회 위원장이 소집

(안건 부재 등의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순연 가능)

- 비정기 소집 : 안건 발생 시 대면, 서면의 형태로 위원장이 수시 소집

2) 절차

- 구매 업무 절차 수행 중 관련 항목이 내부심의위원회 심사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, 구매 부서장은 품의를 득하기 전에 내부심위원회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, 내부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매 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.

3) 서류의 보관

-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부터 3 년간 보관한다.

3. 심의위원회 구성

전사 구매관리 주관부서 담당임원은 위원장에 보임하며, 위원장은 비 상임위원과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. 상임위원은 '공통구매업무 절차서'의 규정에 따른다.

4. 심의 내용

1) 협력업체 평가/관리

- 지속 거래 업체 유지, 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
- 협력업체의 이의 신청 건 심의

2) 구매관리

- 품목별로 정해진 구매부서에 의해 구매업무가 수행되는지 여부 심의
- 구매요청부서(또는 수요부서)에 의한 구매업무의 사전집행이나 직접적인 업무 관여 여부 심의

- 구매관리규정의 수의계약 허용 외의 건에 대한 공정성 및 적절성 등에 대한 심의
- 거래금액 10 억원 이상의 거래 건에 대한 신규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한 심의. 단, 경쟁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로써 구매관리부서에서 다음 각 항목의 심의 항목 충족 사전 확인 시 심의 면제
 - ① 서면계약서 교부의무 준수 여부
 - ② 부당한 거래대금 결정 금지 위반 여부
 - ③ 협력업체에 물품 등의 구매 강제금지 위반
 - ④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 여부
 - ⑤ 관계사와의 수의계약일 경우 타당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

3) 공통사항

- 심의 내용의 구체적 사항은 '공통구매업무 절차서'의 규정에 따른다.
-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-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이 가이드라인은 6 월 11 일 부로 시행한다.